

제20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5. 9. 1.(화) ~ 9. 9.(수)

附 議 案 件

총 6건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I. 의회운영위원회 (2건)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7

II. 자치행정위원회 (2건)

-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III. 복지건설위원회 (2건)

-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20
-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2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 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3인이상 5인이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촉기간중”을 “위촉기간 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촉기간중”을 “위촉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기간중”을 “검사기간 중”으로 한다.

제2조(「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폐회기간중”을 “폐회기간 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위원중”을 “상임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한다.

제3조(「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절차등“을 ”절차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4일이상”을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월이내”를 각각 “6월 이내”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제1항 각호의 청구자”를 “청구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망·상해등”을 “사망·상해 등”으로, “보상금액등”을 “보상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1인과 위원4인”을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하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4인”을 “4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감사장소등”을 “감사장소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사무중”을 “행정사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등”을 “위원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요경비등”을 “소요경비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출자·출연법인중”을 “출자·출연법인 중”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한다.

제10조 중 “계속중”을 “계속 중”으로, “수사중”을 “수사 중”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출석일등”을 “출석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결진술일등”을 “의결진술일 등”으로, “1일전”을 “1일 전”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증언등”을 “증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만16세미만의 자와”를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증언도중”을 “증언 도중”으로, “경우등”을 “경우 등”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중 “여비등”을 “여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비등”을 “여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직원중”을 “임직원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성금등”을 “조성금 등”으로, “대부금등”을 “대부금 등”으로 하고, “임직원중”을 “임직원 중”으로 한다.

제18호 제목 중 “불출석등”을 “불출석 등”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전단 중 “통보등”을 “통보 등”으로 한다.

제28조 중 “구성·운영등”을 “구성·운영 등”으로 한다.

제6조(「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조기관중”을 “보조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속 공무원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동일직급이상인 자”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분장등”을 “사무분장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 중 “이송등”을 “이송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청원등”을 “청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의 개정)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의 개정)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및 제8조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예산사정등”을 “예산사정 등”으로 한다.

제5조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1조에 따라”로 하고, “내부규율등”을 “내부규율 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을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으로 한다.

제28조의2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심의중”을 “심의 중”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본회의중”을 “본회의 중”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조례안 기타”를 “조례안과 그 밖의”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시간등”을 “시간 등”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1호 및 제60조 본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66조의2제4항 및 제7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4조제2호 및 제6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7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0조제5호 및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인재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다음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 다음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직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 ⑦ (생략) 〈신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인재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u>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6의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신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u>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u> ② <u>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u> ③ <u>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u> ④ <u>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직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u>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영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 관리·운영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및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2.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3.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4.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 관리·운영 5. 광명골프연습장 관리·운영 6. 도덕산캠핑장 관리·운영 <신 설> <신 설>	제19조(사업)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공영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 관리·운영</u> 8.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및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u>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 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관 계 법 령	내 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광명시 시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의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 고 자 료(인근시 조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8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하도상가 관리
2. 체육시설 관리
3.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관리
4.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5.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6. 가로·보안등 관리
7. 종량제봉투 관리 운영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 및 위탁수수료는 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및 위탁수수료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공단은 제1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5>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2.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사업(방치차량 견인관리 포함)
3. 시흥그린센터 운영사업
4. 종량제 봉투 판매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사업
5. 시흥환경미화타운 관리운영 사업
6.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사업
7.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물 중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의 운영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21조(대행사업의 운영방법 등)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호 위·수탁계약에 의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6. 15, 2012. 7. 11>
- ⑤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흥시 세입으로 한다.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종사자”란 자동차관리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액은 1회마다 3만원으로 한다.

- ②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관리법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표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라고 인정되면,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확정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E-mail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신고 또는 고발 사항	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		
	위반 행위자	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		
		주소 또는 위치		
	신고 또는 고발 내용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명시장 귀하 첨부 1. 위반행위 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전경 포함 촬영) 2. 기타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제84조(과태료) ①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5.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서 광명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의 확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시장은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행정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광명시지회가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제반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선박에 승선하여 항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선법」에 의한 도선사를 포함하며, 이하 "선박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기상조건·해상조건·항로표지 및 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③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공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항공기의 운항전 확인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등을 행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내 용
자동차관리법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삭제 <2011.5.24.> 2. 삭제 <2011.5.24.> 3. 삭제 <2011.5.24.>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 사항의 처리 6.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